

『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블랙박스 공연장 Be IN;(비인)』 2024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에서는 2024년 Be IN;(비인) 상반기 수시대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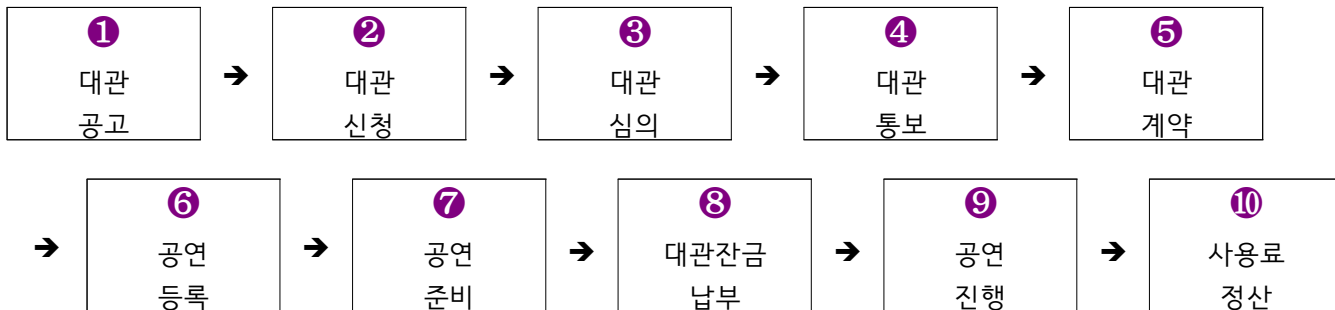
2024. 04. 09.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 대관개요

- 대관종류: 수시대관(상반기 2차)
- 대관대상: Be IN;(비인) 공연장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연 콘텐츠
 - 운영 목적: 공연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
- 대관기간: 2024년 4월 ~ 7월 중 대관가능일

구분	대관일수	대관가능일	
2024년 상반기 수시대관	44일	4월	17일~18일, 20일~21일, 26일~28일
		5월	1일~5일, 14일~16일
		6월	6일~9일, 11일~16일, 19일~23일
		7월	9일~14일, 17일~21일, 23일~25일
※ 위 대관가능일은 대관공고일(2024. 4. 9.) 기준으로, 향후 수시대관 접수 및 승인상황에 따라 변동되오니, 반드시 대관시스템에서 대관 신청가능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- 대관시설: 공연장, 연습실, 분장실(4개실), 공연장 부대시설
- 대관료: 대관 시스템(partner.be-in.kr) ‘대관안내’ 페이지 참고
- 대관절차



2

대관신청

□ 접수기간

- 대관공고: 2024. 04. 09.(화) ~ 대관 마감시까지
- 대관신청: 2024. 04. 09.(화) ~ 2024. 07. 11.(목)

※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(대관시작일 최소 2주전 신청 필수)

□ 대관신청

- 접수방법: Be IN; 대관시스템(partner.be-in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신청방법: 대관시스템 회원가입 후 대관신청 진행
- 신청서류

연번	신청서류	제출방법	비고
1	대관신청서	대관시스템 입력	필수
2	공연 상세계획서	대관시스템 입력	필수
3	부대시설사용신청서 (추후 변경가능)	대관시스템 입력 (리허설, 공연 등 사용일만 요금부과)	필수
4	단체·공연소개 자료 및 기술자료	대관시스템 입력 (신청완료 후) [신청내역]-[첨부분서]	필요 시 (권고)
5	사용료 감면 신청서	대관시스템 입력 (신청완료 후) [신청내역]-[첨부분서]	해당 시 필수
6	사업자등록증 (개인: 주민등록증)	대관시스템 입력 (신청완료 후) [신청내역]-[첨부분서]	필수

※ 대관신청 마감일까지 필수 신청서류 1개라도 누락 시 평가에서 제외

※ 사용료 감면 신청서: 대관료만 해당(부대시설 사용료 해당없음) / 미제출 시 감면불가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Be IN; 대관규칙(붙임1) 및 대관시설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 - 대관신청서 및 공연 상세계획서 작성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
(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)
 - 무대활용 계획(무대, 음향, 조명 등) 관련 자료(도면, 이미지 등) 별도 첨부 권고
- ※ 대관시스템 대관신청 완료 후 [신청내역]-[첨부분과일]에서 별도 첨부

3 대관심의 및 통보

□ 심의일시: 매주 월요일

※ 매주 월요일~금요일(18시 이전) 대관신청 건에 한하여 차주 월요일 심의진행

※ 금요일 18시 이후~ 일요일 신청 건에 대하여는 다다음주 월요일 심의 진행

□ 심의위원회: 운영규칙에 따른 임시 심의위원회 구성

□ 심의방법: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가부제

□ 심의기준

심의내용	세부내용	배점
적정성	<공연장 운영목적의 부합도> - 해당 공연이 Be IN:(비인)의 규모 및 특성(블랙박스 공연장)에 특화되었는가? (20점) -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성 및 콘텐츠 산업으로서 유통가능성이 높은가? (10점) -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? (10점)	40점
전문성	<공연진행 및 무대운영의 추진체계성> - 공연 운영인력의 조직구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가? (10점) - 무대설치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? (10점) - 공연진행 및 홍보마케팅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합리적인가? (10점)	30점
작품성	<기획의 완성도 및 발전가능성> - 공연기획 및 제작의도, 무대디자인,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? (10점) -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? (10점) -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? (10점)	30점
합 계		100점
우대가점	- 티켓 판매 여부(유료공연 여부)	5점

□ 대관승인: 공연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일자, 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하여 최종 승인

○ 승인 결정기준

득점	70점 이상	70점 미만
결과	승인(또는 일정조정 승인)	부결

○ 일정조정 승인: 공연 스케줄 및 공연장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
사용일자, 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하여 최종 승인

○ 승인 단체간 대관일 경합 시

-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순위, 차순위 대관단체 선정
- 차순위 대관단체 일정 조정 시행(조정 불가시 1순위 대관단체 승인)
- 우선순위: 공연장 운영규칙 제15조 4항에 따름

1. 융복합 공연(행사) 또는 전시/행사

※ 융복합 : 여러 장르가 복합되거나,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첨단공연

2. 콘텐츠 산업 관련 공연/전시/행사

※ 콘텐츠 산업 :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(이들의
복합체를 포함한다)의 제작·유통·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

3. 콘텐츠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 관람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공연 또는 행사

□ 대관승인 통보: 대관심의 후 3일 이내

○ 대관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및 승인단체 개별 통지

4 유의사항

○ 대관 선정 제외 대상

- ※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운영규칙 제22조 1항(대관의 제한 및 취소) 적용
-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
 -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 - 대관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 -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공연/행사가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
 - 주 목적이 콘텐츠산업 활동이 아닌 친목도모, 기업체,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, 보험 등 상품판매 목적의 행사,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 목적인 경우
 - 대표 또는 주요 참여자가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
 -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안전한 공연 제작을 위해 셋업, 철거, 연습, 리허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관일정에 반영하여야 함. (당일셋업, 당일공연 지양 / 1회 이상의 준비대관 포함 권고)

※ LED 사용 시 사용자가 직접 설치 및 해체하여야 하며 해당 소요기간을 대관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

○ 무대조명·음향영상 디자인 및 오퍼레이터, 크루(셋업 및 철수)인원 지원 불가

※ 비인은 블랙박스 공연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무대, 조명, 음향, 영상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
비어있는 공간으로, 대관자가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셋업 및 철수(원복)하여야 함.

○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, 주말 공연인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하며, 각 회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 최소 1시간 30분~최대 3시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함(작품 성격 및 공연 소요시간에 따라 조율 가능)

○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 중이므로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원칙상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음(단,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일부 조정 가능)

○ 대관 승인 이후 진행사항 ※ 관련사항 별도 안내 예정

- 대관계약(대관료 10% 계약금 납부) 및 티켓판매 위탁계약(티켓판매시) 체결
- 무대설치계획서 등 스텝회의 자료 제출
- 예매 개시 희망일 최소 10일 전까지 하우스 회의(판매등록 및 관객 안내사항 관련 내용 협의) 진행
- 공연 최소 2주전 무대 스텝 회의(확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 상세 이용계획 협의) 진행

○ 대관료 납부

- (선금) 대관 승인 후 대관료의 10%를 10일 이내 납부
- (잔금)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

○ 대관료 감면

- 전액감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연 또는 행사
- 반액감면(사용료의 50%) : 사용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도로 등록되고,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관, 단체, 개인
- 감면대상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시스템에 입력

5 대관 사용자 필수 이행사항

-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,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대관자는 공연장 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연장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, 공연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.
- ③ 대관 계약 후,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무대스텝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,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무대 설치계획서(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)
 2.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(출입자 명단 전원)
 3.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(출입자 명단 전원)
 4. 성평등·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(출입자 명단 전원)
- ④ 무대, 조명, 음향, 영상 등 공연과 관련한 디자인,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대관자가 하여야 하며, 공연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(오퍼레이터 등) 또한 별도로 두어야 한다.
- ⑤ 대관자의 장비 반입 및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며, 공연 종료 후 공연장의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.
- ⑥ 대관자의 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대관자는 관람권의 판매를 공연장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총 좌석 수의 최소 20%에 해당하는 좌석을 비인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여야 한다.
- ⑧ 모든 공연 및 행사의 관람권 및 교환권은 규정된 객석 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함을 원칙으로 하며, 대관자는 공연/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대관자의 예약 및 초대자 응대, 공연/행사 관련 질의 응대를 위한 티켓담당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.

- ⑨ 공연장 및 로비는 화환의 반입을 금한다.
- ⑩ 공연과 관계된 판촉, 사인회, 리셉션, 프레스콜, 프리뷰, 촬영 등의 행위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 하에 가능하다.
- ⑪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의 촬영, 녹음, 녹화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연장과 협의해야 한다.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촬영 중 이동이나 소음(카메라 셔터 소리 등) 발생 시 하우스 매니저의 판단으로 촬영을 즉각 중지할 수 있다.
- ⑫ 대관자가 공연 및 행사를 위해 반입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)에 의해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, 사전에 방염필증을 공연장 측에 제출하여 승인된 후 반입할 수 있다.
- ⑬ 대관자는 전체 5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.

6

문의처

- ☐ 담당부서: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- ☐ 연 락 처: 064-735-0676 / 064-735-0675
- ☐ 이 메 일: aigaiga@ofjeju.kr